

# 電源立地地域の 支援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⑤

鄭 熙 宙

韓國原子力文化財團 專門委員

## (1) 지원제도의 목적

(가) 해당지역주민의 전원개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협력방안을 정부시책으로 법제화

○전원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제반 피해를 분류하여 보상.

(나) 전원시설주변지역주민의 갈등을 무마·해소함으로써 발전소의 원활한 운용과 전원개발을 촉진.

## (2) 지원대책 개요

(가) 직접지원사업 : 주민자녀의 육영사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홍보사업, 지역업체들로부터의 자재 및 공사발주 등.

(나) 간접지원사업 : 지역공공시설 투자사업, 주민 소득증대사업, 지방재정보조를 위한 각종 세금지원, 지역농수산업, 상공사업, 해당지역 농수산물 판촉사업 등.

## 마. 일본의 전원개발촉진시책

### (1) 전원3법의 실시배경과 변천

과거 전설하였던 우리 나라 전원개발사업의 성장도

근래에 이르러서는 입지난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기로는 그 사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경제대국을 이룩한 이웃 일본도 최근에 와서는 전원입지추진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나빠져가기는 우리와 비슷한 사정이라는 보도자료에 빈번히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최초원자력발전소인 고리가 1978년 4월에 운전을 개시하기보다 12년이나 앞서 1966년 7월 용량이 적기는 하지만 “도오카이”원전을 운전 개시한 일본은 '92년말 현재 전체 설비용량이 1억8131만4천kW로서 우리의 2412만kW에 비해 약 7.5배에 이른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 에너지의 장기안정교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4년 이른바 전원 3법이라 불리는 「전원개발촉진세법」, 「전원개발특별회계법」, 「발전용 시설주변정비법」을 발족시켜, 원자력을 중핵으로 하는 전원개발을 위한 입지의 강력한 추진에 힘써왔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원3법에 힘입어 전원입지추진이 활발이 진행돼 왔으나 최근 수년간에 걸쳐 상기 법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소화가 부진하여 집행실적이 1/3선 수준에 머물렀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전원시설 계획보다는 입지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정부에서 과거 전원입지를 위하여 설립한 전원특별회계는 신국면을 맞이하여 개선안을 마련, 완료단계에 와 있다. 참고로 일본의 전원개발절차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 (2) 전원3법·제도의 개요

일본의 입지추진상황이 점차로 이와 같이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나라가 '90년초에 들어서 일본보다 16년 뒤져 실시를 보게 된 현행제도의 내용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강한 느낌을 금할길이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일본의 「전원 3법」제도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향할 바 그 개선책을 찾아보기로 한다.

### (가) 전원 3법의 목적

#### ① 전원개발촉진세법

원자력 및 화력, 수력을 위시한 발전시설 등의 건설촉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법

전원개발촉진세법에 따른 세수를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또는 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원입지대책비로서 지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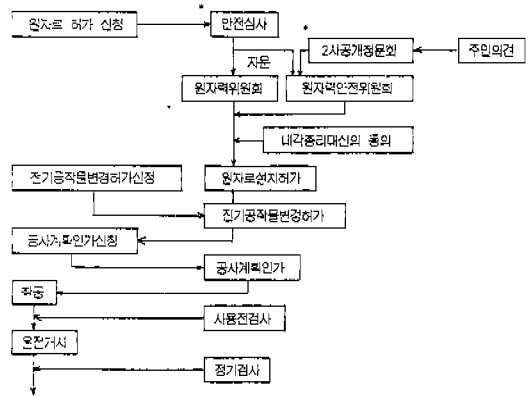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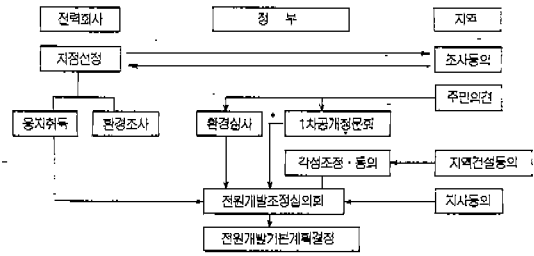
#### ③ 발전용시설 주변지역 정비법

발전용시설의 주변지역에서 공공시설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발전용시설건설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데 목적을 두며 3법을 圖示하면 그림 4와 같다.

### (나) 전원3법·제도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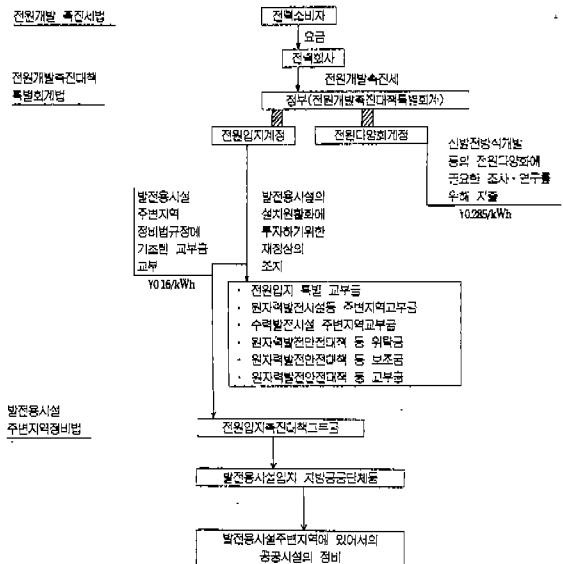
#### ① 지원사업이 대상으로 삼는 시설 및 항목

- 원자력발전시설
- 화력발전시설
- 수력발전시설



\* 표시는 원지력발전소에 한하여 필요한 수속임.

〈그림 3〉 일본의 전원개발 절차 흐름도



〈그림 4〉 일본의 전원 3법

- 원자력발전 안전대책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실증 시험('91년도, 17개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원입지의 환경조사 및

원자력홍보연수활동과 기타 조사('91년도 6개 사업)  
 -원자력 발전시설에 방출되는 방사선의 감시, 온배수의 영향조사, 정비계획작성 등('91년도 7개 사업)

② 지역협력사업시행 대상지점

- 원자력발전소 : 35만 kW 시설용량이상,
- 석탄화력발전소 : 10만kW 이상.
- 수력발전소 : 1천kW 이상,
- 사업단이 설치하는 발전소 : 15만kW 이상,
- 오끼나와현구역내발전소 : 8만kW 이상.

③ 사업대상범위

- 원자력, 화력발전소 : 발전소 소재지 및 필요한 경우의 시, 정, 촌.
- 수력발전소 : 발전소 소재 시, 정, 촌(단, 지사가 인정하는 예외지역).

④ 협력사업 재원

일반전기사업자의 판매전력량 매 1,000kWh당 445엔의 전원개발촉진세를 징수하여 이를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립하여 임지 시, 정, 촌과 주변 시, 정, 촌에 대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⑤ 협력(지원)사업재원의 계정별 교부금 산출기준

<표 7>

공공용시설명	공공용시설의 내용
1. 도	都道, 府·縣道, 市町村道(도로의 부속물 포함)
2. 항	소형선박용의 수역시설의 외곽시설, 계류시설 및 관련된 입항교통시설
3. 어	연안어업용 소규모 어항시설
4. 도 시 공	차단녹지, 기간공원(아동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종합공원, 운동공원)
5. 수	상수도, 간이수도
6. 통 신 시 설	유선방송전화시설, 유선방송시설, TV방송 공동수신시설, 기타 유선TV방송시설, TV방송중계시설, 무선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7. 스포츠·레크레이션 관련 시설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공원, 녹지, 스키장, 스케이트장, 캠핑장, 유보도, 싸이클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8. 환경위생 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분진처리시설, 분토처리시설), 공공하수도, 도시하수로, 배수로, 환경감시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묘지, 화장장, 도로청소차, 제설차, 일반폐기물의 운반차(쓰레기 수집차, 분뇨수집차), 영구차, 공해측정차,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9. 교육문화 시설	각종학교, 공민관, 도서관, 지방역사민속자료관, 청년의 家, 기타 사회교육시설, 노동회관, 학교 급식센터, 유검도장, 집회소, 유치원, 문화회관, 급식운반차, 학교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10. 의료 시설	병원, 진찰소,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중요한 의료장치기구, 구급차,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11. 사회복지 시설	아동관, 보육소, 아동유원, 모자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노인정, 노인휴양시설, 노인욕조차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12. 소방관련 시설	소방시설
13. 국토보전 시설	산사태방지시설, 급경사지붕괴방지시설, 삼림보안시설, 해안보전시설, 하천·사방시설
14. 도로교통안전 관련 시설	신호기, 도로표지, 교통안전홍보차,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15. 열공급 시설	지역냉난방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16. 산업진흥관계 시설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農道, 林道, 농업용배수로, 集落排水路, 농림수산물의 공동저장소, 시장, 양어시설, 選果場, 稚鰻飼育所, 농림어업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보급전시등의 시설, 漁礁, 物揚場, 바지船, 고동이용형어선, 대형어구, 어장연락도, 급유시설, 농림수산물의 공동가공·운반유통시설, 가축위생시설, 공동농업용기기, 농업시험장, 임업시험장, 수산시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관광업 관련시설) 스키장, 테니스장 스포츠 시설, 遊歩道등의 레크레이션 시설, 遊藝施設, 국민숙사등의 숙박·휴양시설, 주차장, 관광센터,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상공업 및 기타산업 관련시설) 공동단지, 공업용수도, 직업훈련시설, 상공회관, 物産館, 기타 보급전시등의 시설, 시장, 하치장, 주차장, 공업시험장, 아케이트, 트랙터미날, 유통센터, 공동창고,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및 기타 적용규범

기본적으로 6개 계정의 교부금이 있으나 그중 하나는 2가지로 갈린다.

㉔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발전용시설의 소재

시, 정, 촌 및 주변 시, 정, 촌을 대상으로 都 道 府 縣지사가 작성하여 정부승인을 받은 정비계획에 입각한 표7과 같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다.

그 교부금한도액 산출방법은 발전용시설소재 시, 정, 촌 교부금총액을 원칙적으로 발전용시설출력에 발전용시설종류별(표 8참조)로 정해진 단가와 계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출력이 적은 수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상기표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표 9에 표시된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㉕ 지원입지 특별교부금

① 원자력 발전시설 등 주변지역교부금: 운전중, 공사중 및 '95년말까지 착공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이 교부대상으로 되며 다음의 사업에 총당할 수 있다.

- 급부금교부보조사업: 전력회사로 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주민, 기업등에 대한 급부금의 교부사업.
- 기업의 도입·산업의 근대화사업: 발전용시설주변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업 도입·산업근대화사업.

<표 8>

발전용시설	kW당 단가	계 수
원 자 력	550엔 (750엔) (註 3)	7
화 력 (제 1종 지역에 설치) (註 1)	550엔	3 (석탄화력4)
(제 2종 지역에 설치) (註 2)	250엔	
수 력	250엔	5

(註 1) 제 1종지역이란, 공업재배치촉진법에 규정하는 유도지역 또는 공업집적도가 1미만의 시, 정, 촌 지역임.

(註 2) 제 2종지역이란, 제 1종지역이외의 지역임.

(註 3) 1995년까지 착공한 시설에 대한 특례단가로서, 특별히 인정될 경우 적용됨.

<표 9>

대상발전소 대상발 전소가 예측되는 시, 정, 촌의 수	5,000kW이상 발전소의 경우	5,000kW미만 발전소의 경우
1	5500만엔	4000만엔
2 또는 3	매시, 정, 촌 마다 4000만엔	매시, 정, 촌 마다 2500만엔
4이상	1억1000만엔/ 시, 정, 촌의 수	8000만엔/ 시, 정, 촌의 수

註 1개의 시, 정, 촌의 구역에 2개이상의 대상발전시설의 설치공사가 병행될 때에는 2호기 이후것에 대해서는 상기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도액으로 함.

◇ 산출방법

원자력발전시설의 능력구분에 따라 다음 표 10의 방법에 의해서 얻은 교부단가에 해당 시, 정, 촌의 세대수 및 기업 등의 계약 kW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합계금액이다.

<표 10>

설비능력구분	주민(엔/호·월)	기업 등 (엔/계약kW·월)
100만kW미만	300	150
100~200만kW	400	200
200~300만kW	500	250
300~400만kW	600	300
400~500만kW	700	350
500~600만kW	800	400
600만kW이상	900	450

註 1) 인접 시, 정, 촌의 기본단가는 원측으로 위 표의 반액이다.

2) 신규시설에 적용되는 할증조치

$$\text{해당기본단가} \times \left( 1 + 0.5 \times \frac{\text{신증설능력}}{\text{설비총능력}} \right)$$

㉕ 전력移出縣등 교부금: 발전용시설주변의 지역주민을 위한 기업도입·산업근대화사업 및 기업입지자금대부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 산출방법

다음 표 11에 따라 이출전력량(발전전력량과 소비전력량의 차)당 일정액을 교부하고 있다. 단, 기업입지자금대부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교부금액을 50% 한도로 더 많이 증액해 준다.

〈표 11〉

이출전력량	교부한도액	(50%활종의 경우)
50억kWh 미만	0.5억엔	0.75억엔
50~100억kWh	1	1.5
100~150억kWh	2	3
150~200억kWh	3	4.5
200~250억kWh	4	6
250~300억kWh	5	7.5
300~350억kWh	6	9
350~400억kWh	7	10.5
400~450억kWh	8	12
450~500억kWh	9	13.5
500억kWh 이상	10	15

㉔ 수력발전시설주변지역교부금 : 수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완화를 위한 시설정비 등 사업으로서 도로, 수도, 통신, 환경위생, 지역사회, 소방, 국토보전, 농림수산업 및 홍보에 관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1984년부터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영향완화사업으로서, 농림수산업에 관한 종묘생산시설, 양식시설 등을 교부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 산출방법

당해 시, 정, 촌에 존재하는 수력발전소에 따라 산출한 연간발전생전력량에 kWh당 0.075엔(양수는 0.0375엔)을 곱한 금액이 된다.

- 교부기간

원칙적으로 7년간이지만 수력발전의 신규개발에 협력하여, 통산대신이 인정할 경우에는 교부기간을 8년간 연장해준다. 최저보증액 450萬엔/시, 정, 촌, 최고한도액 4,500萬엔/시, 정, 촌

㉕ 원자력 안전대책위탁비 : 원자력발전시설 등의 안전대책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조사 또는 실증시험에 충당하고 있다.

참고로 1991년도에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실증실험 등 위탁비」의 16개 위탁사업에 414억엔의 예산액이 계상되었다.

㉖ 원자력발전 안전대책보조금 : 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전원입지의 환경조사 또는 원자력홍보연수활동, 기타 조사 등에 충당하고 있다.

1991년도에서는 「원자력홍보연수시설 정비비보조금」의 5개 활동조사에 89억엔의 예산액이 계상되었다.

㉗ 원자력발전안전대책 등 교부금 : 원자력발전 시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감시, 운배수의 영향조사, 정비계획의 작성 등에 충당하는 교부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1991년도에는 「방사선감시교부금」외 6개 교부금의 예산액이 68억엔으로 계상되었으며, 각개 사업에 따라 소정의 산출방법으로 교부기간·금액이 산출된다.

(다) 전원입지대책위원회 설치와 「전원입지의 원 활화방책」보고서 개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에 전원입지추진을 위하여 설정된 이른바 「電源特會」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다.

석유파동이 있었던 직후인 1974년에 전원입지지역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전입입지의 원활한 추진을 이룩하기 위해 설정한 것중에 전원3법교부금제도,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電源特會)라는 것이 있다.

이 전원특회가 최근 10년 정도 전원입지지역주변의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의 예산이 도로 등의 공공사업이 생각했던대로 추진안되는 등 장애에 부딪쳐 입지확보가 부진한 것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아오모리현 「록가쇼무라」의 민간 재처리공장의 본격적인 착공이라든가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에 탄력이 불기시작하는 등 그외로도 지역과의 「공생」의 기치와 더불어 새로운 시책을 전개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1992년 12월 2일 電源開發調整審議會(電調審)는 입지대책에 관한 보고서「전원입지의 원활화방책」을 최종으로 마무리했다. 동 보고서는 電調審이 1991년말에 日本學士院會員인 山村昌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電源立地對策檢討委員會를 설치한 이래 92년 7월에 중간보고회 공표 및 그후의 현지조사 심의 등을 거쳐 최종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동 보고서를 공표함에 즈음하여 전원개발조정심의회(회장, 내각총리대신)에서는 급후 전기사업자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관계省廳, 지방공공단체 등 관계자 소원은 본 보고서에 따라서 조속히 필요한

대책의 실시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욱, 산업계, 지역주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전기」의 필요성,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전원입지의 원활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호소했다. 여기에 「전원입지의 원활화 대책」의 개요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① 現狀에 대한 基本的認識

일본경제는 조정과정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하반기전력수급은 7월하순 및 8월말부터 9월상순에 걸쳐 흑서가 계속되어 피크시 전력수급을 둘러싼 상황은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력수요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국민생활의 다양화, 국민의 쾌적생활지향 등을 반영하여 금후에도 어느 정도 높은 신장이 예견된다.

그러나, 원자력·화력발전소의 입지에 대하여는

i) 전원입지, 특히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ii) 국민의식속에 원자력에 대한 불신감 또는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것, iii) 어업관계자의 이해가 충분치 못한점, iv) 지방지역과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v) 발전소용지의 원활한 취득에 난관이 많은 점, vi) 지방지역의 요구가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전기사업자의 대응노력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해마다 난관의 증가를 보임에 따라, 최근에는 전원개발에 있어 화력에서도 10년, 원자력에 이르러서는 20년 이상의 회임기간(입지신청으로부터 운전개시까지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이대로 나간다면 장래 심각한 권력공급부족사태를 초래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조기에 대책을 세워 실시할 필요가 있다.

### ② 對策의 基本的 方向

#### ㉑ 전원입지에 대한 국민합의의 형성

① 「舉國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서의 전원입지의 촉진

전원개발의 주체는 전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사업자이고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전기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제에 필요불

가결하기 때문에 전원개발은 종합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서 「거국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로서도 정부가 일체로 되어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합에너지대책추진간담회의의 양해하에 대규모 중요전원을 「要對策중요전원」으로 지정하여 그 입지를 촉진시켜 왔으나, 현재 요대책중요전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는 전원입지점에 대하여 그 입지촉진의 관점으로서도 「거국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정부일체로 된 지원체제를 확립시켜 전원개발촉진을 위한 전원개발의 필요성, 중요성을 국민에게 강력하게 호소함과 동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전원개발을 「거국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더라도 전원개발의 주체는 전기사업자, 지방의 지역진흥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에는 변함이 없고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이들 제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地方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전원입지는 전원개발의 대원칙인 것이다.

#### ㉒ 弘報對策의 積極적 추진

② 전원입지 초기단계에서의 홍보센타설치 및 종합적 홍보대책의 추진

전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구하여 지방정세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홍보센타등을 설치하고 전원개발의 利點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센타를 설치할 경우 정부로서도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강연회, 토론회의 실시 등 市, 町, 村을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및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등도 포함하여, 통상성, 과학기술청, 전기사업자 및 관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홍보대책을 계승하여 충실·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농림·어업 관계자 등 전원입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합의형성이 필요한 인사에 대하여는 관계 省廳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종합에너지·원자력 홍보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지방의 수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원입지선정지의 견학에 참가시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③ 전력수용가축이 맡을 에너지홍보의 추진

大量수용가를 필두로 한 산업계에 대해 사내외의 경제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에너지의 需給 양면에 관하여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활동에 산업계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아울러 그 활동이 조직적, 논리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體制形成을 요청한다.

㉞ 국제기관에 의한원자력발전소의 운전상황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포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대한 의혹,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가 두터운 국제기관인 국제원자력기관(IAEA)에 대해, 운전관리조사단(OSART)의 정기적인 파견을 요청하여, 그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㉟ 국민의 필요에 대응하는 안전성의 설명의 추진.

국민의 원자력발전소 苛酷사고에 대한 불안이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i) 종래에는 사고의 발생방지에만 力點을 두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관한 설명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만일 이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의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을 비롯하여 가지가지의 안전대책이 다중적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ii)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방사선, 방사능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보급에 힘쓴다.

㊱ 보도관계자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정보제공의 추진.

보도관계자에 대해서 중앙이나 지방도 같이 원자력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을 갖도록 적절하고도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동시에 발전소견학회, 연구집회의 개최 등으로 보도관계자의 원자력에 관한 이해의 촉진을 도모한다.

㊲ 원자력발전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신뢰감의 확보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실적 蓄積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로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품질보증활동을 충실히 강화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가일층 향상시킴과 동시에 안전운전실적을 축적시킴으로써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감의

향상을 도모한다.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대책의 확립

㉢ 식품 등의 안전성검사체제의 충실·강화.

㉣ 정보공개에의 촉진과 접근수단의 정비

원자력발전소 등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관계성청, 전기사업자는 상업기밀, 핵불확산, 핵물질방호 및 사생활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자력정보의 공개에 한층 앞선다.

원자력정보에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철저한 透明성을 도모한다. 또한 에너지·원자력 관계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정보제공기반의 정비를 전국적으로 진행시킬 것과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의 충실화를 한층 더 높인다.

㉤ 에너지교육에 더한층 충실을 기한다.

㉥ 학교교육에 있어서 에너지교육의 추진.

㉦ 교재작성 관계자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정보의 제공.

㉧ 교직원에게 적절하고 확실한 정보제공을 추진

㉨ 학교외의 장소의 적극적인 활용

㉩ 초기단계에 놓여진 개발지점에 대한 電源開發 調整審議會의 대응

초기단계에 놓여진 개발지점의 개발촉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합에너지대책추진 關僚회의가 지정하는 지점에 관한 전원입지를 촉진해야 할 중요한 지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합당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시킬 것으로서 전원개발조정심의회 밑에 상설部會를 설치한다.

그 部會에서는 당해지점의 개발개요, 지방과의 조정상황, 입지촉진상의 과제 등, 당해지점의 상황 파악을 할 것과 동시에 당해지방 공공단체가 당해 지점이 포함된 지역의 진흥의 실시에 관해, 관계 성·청의 협력을 요망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한 지역진흥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언, 협력에 관하여 조사심의한다. 또한 기타 전원입지의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본 보고에 관한 후속 조사 등도 행한다. 또한 部會는 전원개발조정심의회 위원, 학식경험자, 관계 성·청, 관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㉔ 電源地域振興點의 충실·강화

㉔ 지역진흥계획에 대한 지원의 강화.

㉕ 관계 省·廳의 협력체계 확립

초기단계지점의 개발촉진 중요성에 입각하여 관계 성·청은 초기단계지점의 상황파악, 지역진흥계획에 관한 조언, 협력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조정심의회 밑에 설치되는 常設部會의 역원으로 되어, 초기단계지점의 지역진흥계획의 策定 및 그것이 實現되도록 협력한다.

㉖ 地方의 지역진흥책에 대한 협력

지방과 발전소와의 共存共榮을 도모하여 발전소의 蒸氣, 熱등을 이용한 농림수산업, 관광진흥산업유치, 지역 냉·난방 등 지역진흥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발전소와 유치산업의 주변녹화 등 그 지방에 수용이 용이한 환경창조를 指向한다.

地方의 주민이나 경제관계단체 등의 주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참가를 피하여 그 지역의 지속적인 향상, 발전을 위한 현실적,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지원한다.

지방의 특색을 살린 각종 물산등의 시험적 생산·육성사업이나 유통산업, 지역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사업 등을 지원한다.

(財)電源地域振興센터 등을 통한 기업입지 및 프로그램面을 중심으로 한 각종사업을 촉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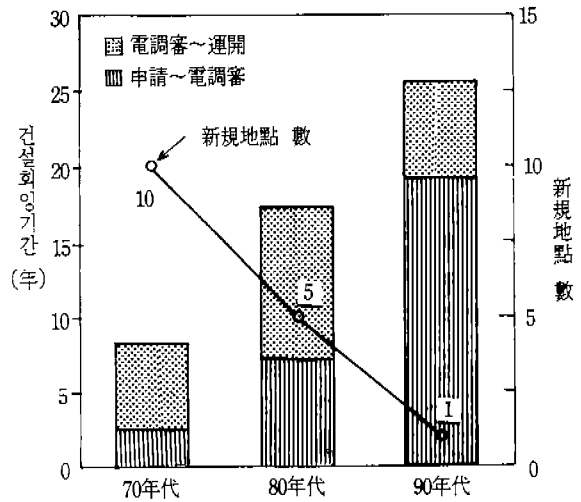
전기사업자에 의한 지방고용, 발주, 구매의 확대를 더한층 도모한다.

㉗ 지역진흥에 필요한 水産 등 각종 진흥책에 대한 지원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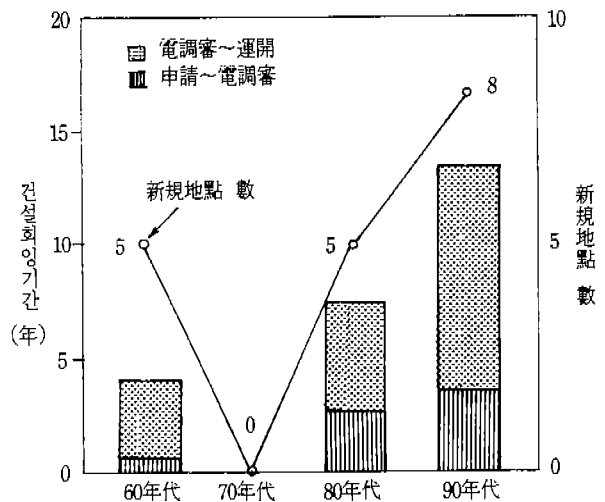
關係省廳은 전기사업자의 적절한 협력과 縣等の 관계部局의 기술적 지원하에, 地方市, 町, 村이나 地方關係者로 하여금 해당지역에서의 수산업을 위시한 각종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환경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 진흥계획의 策定, 당해계획의 시험적 시행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지에서 수산업을 위시한 각종 산업진흥을 위한 과업을 廣域的 觀點에 서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예컨대 증표생산사업, 사료공급사업, 연수사업, 시 혈연구사업)이 적절한 시기에 縣等の 사업으로 진

「電源立地의 圓滑化方策」의 부록자료



〈그림 5〉 원자력 발전소건설 평균 회임기간



〈그림 6〉 석탄화력발전소건설 평균 회임기간

행되는 것이 소망스럽다.

㉘ 用地取得의 圓滑化

㉘ 전기사업자의 용지취득활동을 가일층 강화한다. 전기사업자는 용지취득을 위해 地權者와의 교섭을 종전보다 더 적극적이며 차분히 전개한다.

㉙ 용지취득에 관한 手續의 圓滑化

전원개발을 위하여는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가



〈표 12〉 電源立地促進策이 가져오는 主要 地方利益  
 (最新型的의 135萬kW級 原子力發電施設을 4基 新設한 경우를 想定)

1. 공공용시설의 정비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

약 280억엔(소재 시·정·촌), 약 280억엔(인접 시·정·촌등 합계)

- 상하수도, 도로, 항만, 강변, 방재시설 등의 기반설비
- 학교, 쓰레기처리장, 노인원, 병원, 공민관 등의 생활관련시설 정비
- 농림수산업의 공동가공유통시설, 각종 시험장, 공업단지등 산업진흥지원 시설정비
- 체육관, 수영장 遊歩道, 스키장, 숙박시설등의 스포츠, 휴양시설 정비

2. 전기요금의 실질적할인

원자력발전시설등 주변지역교부금

가정 및 기업, 사업소등에 급부금을 급부

1세대당 年間 21,600엔

1000kW 규모의 공장(중견급)경우 연간 약 1,000萬엔, 200kW 규모의 사무실 빌딩(5층 중규모급)의 경우(注) 인접시정촌등은 상기금액의 1/2액

3. 산업의 도입·진흥

(1) 전력이출현등 교부금

사용처: 산업의 근대화·기업도입 연간 15억엔 정도

(원자력 신규지점소재都道府현에 대한 착공후 5년간, 매년 10억엔의 교부를 포함.)

(2) 기업등에 대한 보조금

입지보조금..... 입지바닥면적 1m<sup>2</sup>당 최고 1萬엔, 1기업당 최고 2억엔, 전국 연간 27억엔

저리융자..... 0.7%의 이자보급, 신규융자 규모는 전국, 연간 550억엔

복리후생시설등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 종업원 등의 복리후생 시설등의 정비.

1기업 및 1시정촌당, 최고 2억5천만엔, 적국에서 27억엔

(3) 산업진흥사업 지원

① 전원입지지역 운배수등 대책비 보조금

환경조사개시전 1지점 최고 연간 6천만엔, 환경조사개시후 1지점 최고 1억5천만엔×5년간

<대상사업> 각종조사, 각종계획책정, 양식, 가공 유통 등

② 전원입지지역 운배수등 광역대책 교부금

환경조사개시전 3억엔×5년간, 환경조사개시후 6억엔×2년간

<대상사업> 종묘생산, 사료공급, 연수사업, 시험연구등

(4) 공업단지의 정비

주변지역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주체에 대해, 최대 1.8%의 이자보급을 한다.

4. 지역진흥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1) 중요전원등 입지촉진대책 보조금

초기단계지점지원책 1지점 최고 연간 8,000만엔, 지역개발계획책정, 행사지원, 시작품의 시작, 시장개척

(2) 산업육성지원사업

① 시·정·촌에 의한「거리진흥사업」의 지원 시·정·촌 최고 1억엔(연간) 지역개발계획책정, 행사지원, 시장개척, 기술도입, 인재양성

② (財) 전원지역진흥센터에 의한 지원사업

연수사업, 전문가 파견사업, 전국대물산전람회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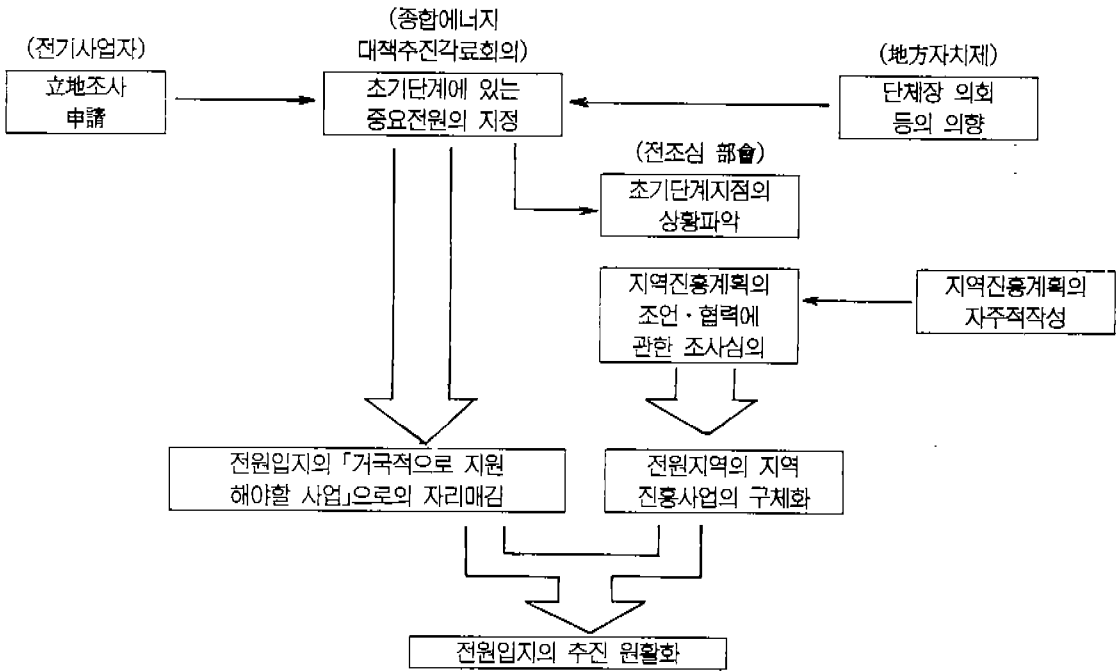
(3) 기타

지역진흥을 위한 조사사업등(상기금액은 표본적인것으로서, 실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필요하지만 현재는 용지의 선행취득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초기단계지점의 개발촉진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종합 에너지대책추진關係會 및 전원개발 조정심의회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맞붙을 것을 전

제로 용지취득에 관한 수속의 원활화를 한층더 도모한다.

㉔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원개발과의 적극적인 맞붙음.



〈그림 7〉 초기단계지점의 입지추진

㉠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전원개발의 추진  
 전원개발의 회임기간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단기적인 경제활동이나 전력수요의 동향에 좌우되지 않는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확실한 전원개발을 한다.

㉡ 전기사업자의 사내체제강화

전원개발의 제1차적 책임은 전기사업자에게 있으며, 質·量양면에 걸친 입지·홍보 체계를 가일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 其他

㉠ 원자력발전소의 신입지 기술연구추진.

- 이 부분은 생략함.-

㉣ 緊要한 電源立地地域支援發想轉換

1978년 10월~1978년 12월 제한송전 이래로 약 16년만에 또다시 제한송전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 상정까지도 각오하며 맞이해야 했던 '92년 하계전력 침두부하의 난관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의 절대적인 절전운동에 대한 호응·협력과 또 한편으로는 예상치 않고 있던 급작스러운

신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탄생된 단기전원개발 건설사업이 별다른 입지확보의 어려움없이 하루아침에 일어짐으로써 무난히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90년에 발표된 '91년~2006년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18기를 포함한 화력, 양수발전소 등 총 85기 건설대상의 입지추진현황을 잠시 훑어보면, 그중 19기에 대한 기확보중의 기존 원자력 및 대용량화력발전소 인접부지와 나머지 66기에 대해 擴張을 검토하고 있는 기존발전소 인접부지 추가확보방안과 신규로 입지를 추진해야 할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긴박한 초미에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지를 알 수 있다.

그간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의 커다란 입지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기업이기도 한 정부산하의 전기사업자라는 이유로 해서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입지 확보여건이 유리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듯 나날이 급격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입지환경상황하에서는 전원입지추진의 發想自體와 그 접근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최근 개정된 시행령을 포함하여 기존 제도권내에서 정부가 종전 보다 아무리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과거 수년간에 걸친 입지를 둘러싼 소요사건사례들을 통해 이미 강력한 「몇가지의 메시지」를 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간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지역지원법 및 최근 개정된 시행령과 더불어 「입지지역에서는 지역진흥의 기둥으로서 발전소의 입지를 자리매김하고, 그 파급효과를 期待」 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지역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가운데서 발전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할는지」를 생각하는 基調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환경의 정비가 진행되어 가고, 소득이 안정 되면 지금까지와는 그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즉 兒童들이 정착하려는 고장과 마을을 만들고, 장래, 꿈을 키우며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려오던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전원입지에만 의존하려던 그들의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 오늘날에 와서 뒤늦게 틀을 잡으려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彌縫策으로 고쳐나가려는 기존 지역 지원의 기초에 의존하는 발전소의 자리매김보다는 과감하게 한발 더 전향적인 자세로 前述한 發想의 轉換을 圖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입지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지역공생형 발전소」의 실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㉔ 支援制度 改善方向의 提言

제5장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에 개정된 지원법시행령 내용에서 개선책을 찾는 대신 현지원 제도만으로 과연 미구에 닦쳐올 전력공급력 부족의

위기를 失機치 않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추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령 개정전까지 파악된 입지확보추진상 가장 큰 걸림들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및 무형의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의 규모로 보여진다.

둘째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전원입지지역과 전력을 받아서 소비하는 모든 지역間에 발생하는 첫번째와 관련된 불공평성을 명분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지원제도와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입지추진은 공개 또는 이른바 투명정책으로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바탕 위에서 현지원제도상 그대로 두어도 무방한 것은 제외하고 우선 개선대상을 略述하면 아래와 같다.

㉑ 支援制度는 國家主導基調의 電源開發支援體制로 轉換함으로써 學國의 次元의 支援이 可能하다고 고찰됨. 이를 위한 豫備調査·檢討 對象項目은

㉒ 國家主體(地自體包含)體制의 組織

㉓ 電氣料金調整

㉔ 稅法을 包含한 관계법령 改正

㉕ 韓電出捐에 依한 現行制度下의 支援金財源을 電氣販賣增稅收로 轉換

㉖ ㉒~㉕ 項 支援財源規模

㉗ 現行法律用語인 “支援”의 使用制限

政府側을 제외한 電氣事業體는 一貫하여 “補償”으로 指稱함이 效果的으로 보여짐 (그 理由는 6項 서두의 첫째와 두번째項 참조)

㉘ 원자력전원지원 거주주민의 전기요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교부금제도를 신설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㉙ 전향과 같은 취지로서 동입지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전기사용료를 보조함이 좋을 것임.

㉚ 개정된 신규원전 건설 및 가동기간 支援金 지급기준은 건설기간을 5년으로, 가동기간은 30년 정도로 체감 조정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㉛ 전원입지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교부금 및 은행 장기저리융자지원등의 조항을 신설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고찰됨.

## 6. 結 論

전원입지지역 지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원 시설의 원활한 입지확보와 발전소건설 기공서부터 준공, 가동·운용 하는동안 그 지역과 공존공영하는데에 있으나 앞으로 더욱 가중될 입지난에 대비하여 즉시 노력을 배가하지 않는 한 수년내에 닥쳐올 전력공급부족의 위기를 면할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다음에 焦眉에 걸린 課題를 指摘함과 동시에 改善方案을 提示하면

1. 國家主導下의 電源開發體制로 轉換함으로써 學國的인 支援의 共感帶擴散과
2. 電源立地선정 및 발전소 운용과정에서 公開 또는

透明性弘報에 盡力하므로써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3. 電源立地地域으로부터의 電力生産供給과 受電地域에서의 電力消費와의 사이에 경제적 損益의 公平性論理에 基礎한 電氣料金の 割引制度를 新設하며

4. 電氣料金を 調整 現實化시키고

5. 絶對不足視되는 立地支援財源을 電氣販賣増稅制度로 轉換確保하며

6. 地域共存型 發電所의 建設 및 運用으로 地域振興에 貢獻을 劃策하는 등, 積極的인 姿勢로 施策에 임해야 할 것으로 結論을 매듭짓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연구보고서

1. “유해폐기물 처리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大學院 千炳浩, 1992. 6.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시행”-국토 개발연구원, 1992. 6.
3. “원자력과 지역이해”-김경동, 홍두승, 서울대 출판부, 1992. 12.
4. “전기사업에 관한 지역주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한전, 전력경제연구소, 1990. 12.

### 국내저서

5. “공해문제와 공해대책”-환경과 공해연구회, 1992. 6.

### 외국저서

6. “明日への創造” 發電所建設中間期, 立地點の聲,

声, 声-柏崎商工會議所, 1989. 2.

7. “現代日本の地域社會”-石川淳志外 3名 共著, 1989. 3.

### 국내자료

8. “전원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업무편람”-한전, 입지처, 1992. 1.
9. “전기사업사료”-한국전력, 1990.

### 외국자료

10. “日本, 電氣新聞”-1992~
11. “日本, 原子力生産新聞”-1992~
12. “原子力資料”-原子力産業會議, 1992. 5 및 1992. 12.
13. “電源立地の概要”-日本, 通産省-資源エネルギー庁, 1991. 3. (연재 글)